
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

치·운영할 수 있는 법인·단체

[시행 2022. 2. 18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18호, 2022. 2. 17., 타법개정]



고용노동부(인적자원개발과), 044-202-7323

1.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
2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
3. 그 밖에 「고등교육법」 및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에 의한 대학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·시설 등을 갖춘 법인·단체

부칙 <제2022-18호,2022.2.17.>

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